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- 가.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이 끝나는 날로 한다.
- 나.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.

2. 계약목적

본 계약목적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,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.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- 가.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 급여비용 중 월한도액 초과 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.
- 나.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한다.
 - 장기요양인정자 : 장기요양수가 금액의 15%
 - (경감대상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 장기요양수가 금액의 6%, 9%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무료)
- 다. 비급여항목(중간식비, 이미용 등)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라. 이용료 수납
 - 월 이용료는 급여 심사가 완료된 이후 이용료안내문을 통해 고지하며 익월 비용수납을 원칙으로 한다.
 - 이용료의 수납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, 입금확인 후 영수증을 발부한다.

4.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

- 가. 신원인수인의 권리
 -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 -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 -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
 -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
- 나. 신원인수인의 의무
 -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
 - 이용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 제공
 - 이용비용의 납부
 - 이용비용 외의 추가비용 소요 시 납부
 -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
 -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

5. 계약의 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
나.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다.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

라. 이용자가 퇴원에 대한 기약 없이 1개월 이상 지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
마.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
바.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
사.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

아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